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전문 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
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전문과목의 명칭 중 ‘흉부외과’의 경우 환자가 그 진료영역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환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‘흉부외과’를 ‘심장혈관흉부외과’로 개정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

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

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전문의의 전문과목) 중 “흉부외과”를 “심장혈관흉부외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문과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흉부외과 전문의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로 본다.

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흉부외과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으로 본다.

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흉부외과 전문과목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과목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

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호 과별의 “흉부외과”를 “심장혈관흉부외과”로 한다.

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·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·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“흉부외과”를 각각 “심장혈관흉부외과”로 한다.

③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제2호 나목 및 같은 목 4)부터 5)까지 “흉부외과”를 각각 “심장혈관흉부외과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전문의의 전문과목)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, 신경과, 정신건강의학과, 외과, 정형외과, 신경외과, <u>흉부외과</u> , 성형외과, 마취통증의학과, 산부인과, 소아청소년과, 안과, 이비인후과, 피부과, 비뇨의학과, 영상의학과, 방사선종양학과, 병리과, 진단검사의학과, 결핵과, 재활의학과, 예방의학과, 가정의학과, 응급의학과,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.	제3조(전문의의 전문과목) ----- ----- ----- <u>심장혈관흉부외과</u> 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의료인력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431